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506552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5. 3. 19.

판결 선고 2015. 4.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2,277,232원과 그 중 31,879,442원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3.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1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 1) 원고는 2010. 5. 2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피고 A은 2013. 2. 26. 원금 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3) 원고는 2013. 7. 1. 대출원리금 31,879,44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397,790원(실제 지출한 407,360원에서 회수한 9,57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출하였다.
- 4)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이행일부터 연 15%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14.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19.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2,277,232원(대위변제금 31,879,442원 +채권보전비용 397,79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1,879,4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3.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서 비롯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3. 2.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3. 7. 1.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 A에게 합계 310,000,000원 상당의 돈을 대여하고 그 일부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피고 A의 위 매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07. 11. 13.부터 2012. 12.24.까지 피고 A에게 합계 30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사이에 위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 A은 피고 B의 매형인점, 피고 B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의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다.

판사 이상원

부동산의 표시

광주시 C 임야 41,253㎡ 중 23,143/82,506 지분. 끝.

